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4. 19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 안 : 2000년 4월 1일 제출
- 회 부 : 2000년 4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(안 제22조제2항)
-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. (안 제22조제3항)

-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. (안 제22조제4항)
-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재직기간 중에”로 기간 확대 (안 제22조제7항)
-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“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”에서 “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공무원”으로 확대 (안 제22조제8항)
-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였으나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도 포함함 (안 제23조)
- 경조사별 휴가대상 확대 (별표2)

5. 검토의견

- 국가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 제16610호)이 1999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
-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 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
-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,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